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(1)

## 서류접수 유의사항

- 서류접수 방문기간
  - 당첨자 : 10월 16일(월) ~ 10월 18일(수) (3일간) 10:00~17:00 [대표번호(1600-5727)를 통한 전화예약 필수]
  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(23.09.15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주소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구성일 및 사유,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  - ※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자격검증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,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.
  - ※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  - ※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일정기간 보관후 파기합니다.

##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서류

| 구분                 | 서류유형 |          | 해당서류                     | 발급기준              |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| 필수   | 추가 (해당자)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|
| 공동<br>서류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신분증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]<br>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○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             | 배우자               | •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   |
| 신혼부부<br>특별공급       | ○    |          | 복무확인서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-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을 명시<br>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- 군복무기간 25년 이상을 명시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             | 피부양 직계존속          | • 소득상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| 배우자               | 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가구원 수에 포함할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안함)<br>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  | 피부양 직계비속          | •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자격요건 확인서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혼인 신고일, 자녀수, 월평균 소득 확인(견본주택 비치)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         | 본인 (또는 배우자)       | 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<br>※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(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)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 필수 함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| 본인 (또는 배우자)       | • 입양의 경우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       | 본인 (또는 배우자)       | • 접수장소에 비치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소득증빙 서류                  | 본인 및 만 19세 이상세대원  | 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         |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| •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 제출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비사업자 확인각서                |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| •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(견본주택에 비치)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한 무직자는 신고사실 없음을 확인(전년도 기준)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부동산 소유현황                 | 본인 및 세대원          | 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           | 본인 및 세대원          | •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|
| 부적격<br>통보를<br>받은 자 | ○    |          |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        | 해당주택              | 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<br>• "소형·저가주택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<br>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당첨사실 소명자료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요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|
| 대리인<br>신청시<br>추가서류 | ○    |         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위임장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| •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(견본주택 비치)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| 신분증 및 인장                 | 대리인               |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<br>•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  |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(2)

##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표

| 공급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(2023년 적용)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인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인                      | 5인                      | 6인                       | 7인                       | 8인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득 기준 구분                     | 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 |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             | 100% 이하                     | ~6,509,452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~7,622,056원             | ~8,040,492원             | ~8,701,639원              | ~9,362,786원              | ~10,023,933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         | 100% 초과 ~ 120% 이하           | 6,509,453원~ 7,811,342원                 | 7,622,057원~ 9,146,467원  | 8,040,493원~ 9,648,590원  | 8,701,640원~ 10,441,967원  | 9,362,787원~ 11,235,343원  | 10,023,934원~ 12,028,720원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 |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             | 100% 초과 ~ 140% 이하           | 6,509,453원~ 9,113,233원                 | 7,622,057원~ 10,670,878원 | 8,040,493원~ 11,256,689원 | 8,701,640원~ 12,182,295원  | 9,362,787원~ 13,107,900원  | 10,023,934원~ 14,033,506원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         | 120% 초과 ~ 160% 이하           | 7,811,343원~ 10,415,123원                | 9,146,468원~ 12,195,290원 | 9,648,591원~ 12,864,787원 | 10,441,968원~ 13,922,622원 | 11,235,344원~ 14,980,458원 | 12,028,721원~ 16,038,293원 |
| 소득기준 초과 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 |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  | 140% 초과, 부동산 가액 (3.31억원) 충족 | 9,113,234원~                 | 10,670,879원~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,256,690원~            | 12,182,296원~            | 13,107,901원~             | 14,033,507원~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         | 160% 초과, 부동산 가액 (3.31억원) 충족 | 10,415,124원~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,195,291원~            | 12,864,788원~            | 13,922,623원~             | 14,980,459원~             | 16,038,294원~             |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661,147) \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  
 ※ (가구원수 산정 기준)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단, 임신 중인 태어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공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.  
 ※ (월평균 소득산정 대상)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(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영제자매 부양) 포함). 단,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
 ※ (월평균 소득)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.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(수입금액)을 근로기간(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)으로 나누어 산정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(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)으로 나누어 산정.  
 ※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(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, 신규취업자, 이직자, 신규사업자, 프리랜서 등)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“주택청약 FAQ(국토교통부 발간)”을 확인하여야 하며,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##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| 해당자격               | 소득입증 제출서류  | 발급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근로자                | 일반근로자  | ① 재직증명서(유직기간이 있는 경우 유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<br>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<br>- 전년도 유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(매월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)<br>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<br>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 | ① 해당직장<br>② 해당직장 / 세무서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  | ① 재직증명서<br>- 전년도 유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(매월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)<br>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<br>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<br>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/근로계약서<br>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| ①, ② 해당직장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전년도 전직자  | ① 재직증명서<br>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<br>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  | ①, ② 해당직장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  |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<br>※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 | ① 세무서<br>② 해당직장                |
| 자영업자               | 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  |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 | ① 세무서    ② 등기소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신규사업자(공고일 이전)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|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<br>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 | ① 국민연금공단<br>② 세무서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법인 대표자   |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전년도 재무제표<br>③ 사업자등록증명원   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| ①, ②, ⑤ 해당직장<br>③ 세무서<br>④ 등기소 |
| 보험모집인 / 방판판매원      |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<br>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 | ①, ② 해당직장/세무서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|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| ① 주민센터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 |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 | ① 해당직장/세무서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무직자                |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전년도 1월 1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<br>② 사실증명 (신고사실 없음)<br>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| ① 견본주택 비치<br>② 세무서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